

사건 관련 판례 검색 및 리서치

C-001 관련 판례

C-002 관련 판례

C-003 관련 판례

C-003-청구 관련 판례

판례	사건	핵심법리	본 사안과의 관련성
판례 1: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다른 재산으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본 사안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 김수경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한 점에서 정확히 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판례는 그러한 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하는 기초 법리를 제시한다.
판례 2: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3207 판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권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본 사안의 원상회복 방법 선택에서 주위적 청구(등기말소)와 예비적 청구(가액배상 300,000,000원)의 이원적 구조가 이 판례의 법리에 정확히 부합하며, 가액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을 제시한다.

C-004 관련 판례

C-004-청구 관련 판례

판례	사 건	핵심법리	본 사안과의 관련성
(1)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다른 재산이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 남은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본 사안은 채무초과 상태의 김수경이 자신의 주요 부동산을 유재석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전형적인 사례로서, 당 판결의 법리가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다. 특히 대물변제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핵심 선례이다.
(2)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목적물의 비중, 무자력의 정도, 행위의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 제시된 '주위적 청구(원물반환)'와 '예비적 청구(가액배상)' 구분 방식이 당 판결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과 부합하며, 특히 부동산 가액이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상회복 범위 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C-005 관련 판례

C-005-청구 관련 판례

판례	사 건	핵심법리	본 사안과의 관련성
(1) 대법원 1998.4.14. 선고 97다54420 판결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사해행위가 되며,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본 사안에서 연대보증채무자인 김수경이 유일한 부동산을 박수용에게 매매한 사건으로, 동 판례의 법리가 정확히 적용되는 사안이다. 본 사안의 청구인은 유일 재산 처분에 따른 사해의사 추정과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주장하고 있다.
(2) 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50875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공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러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당하게 감소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본 사안의 부동산에는 국민은행(130,000,000원), 하나은행(50,000,000원), 임대보증금(100,000,000원)의 선순위 채무가 존재하고, 수익자가 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점에서 동 판례의 법리가 직접 적용된다. 잔존 공동담보가액 계산 방식이 본 사안의 가액배상 범위 산정과 동일하다.

C-006 관련 판례

C-006-청구 관련 판례

판례	사건	핵심법리	본 사안과의 관련성
1순 위 판례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3207 판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부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 김수경이 신용보증 구상채무 (220,000,000원) 부담 상태에서 주요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선순위 담보채무 400,000,000원을 고려한 부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선례이다.
2순 위 판례	대법원 1998.4.14. 선고 97다54420 판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본 사안에서 피고 박수용이 주공아파트를 매수한 후 선순위 담보채무를 승계한 점이 선의의 실질적 실수요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 배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C-007 관련 판례

C-007-청구 관련 판례

판례	사 건	핵심법리	본 사안과의 관련성
(1) 대법원 1998.4.14. 선고 97다54420 판결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자 신의 자산상태가 연대보증채 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 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했 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유일 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 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항상 사해행위가 되므로 사해의사는 추정되 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은 수익자에게 있다.	본 사안은 연대보증인 김수 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 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 김수철에게 매도한 경우로, 위 판례의 "유일한 재산의 매 각"과 "사해의사 추정" 법리 가 직접 적용된다. 수익자인 김수철의 악의 입증책임 배 분도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이 다.
(2) 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 지 않은 채권도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 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 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될 고 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 우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2013년 대출당시 이미 연대보증채무 를 기초로 한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7년 부 동산 양도 당시에도 그 채권 이 존재했으므로 피보전채권 의 존재 요건을 충족한다. 다 만 미발생 채권의 피보전채 권 적격 판단 기준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

C-008 관련 판례

C-008-청구 관련 판례

판례	사 건	핵심법리	본 사안과의 관련성
판례 1 순위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일부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의 원물반환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안은 채무자가 토지를 김수철에게 매각한 직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으로, 근저당권 존재 시 원물반환 불가능성과 가액배상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판례이다.
판례 2 순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 김수경이 유일한 부동산을 김수철에게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배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C-009 관련 판례

C-009-청구 관련 판례

판례	사건	핵심법리	본 사안과의 관련성
판례 1	대법원 1998.4.14. 선고 97다54420 판결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해질 것을 인식하였는가에 의해 판단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본 사안의 채무자 김수경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면서 유일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판례이다.
판례 2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68901 판결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수익자가 이를 다시 전득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양쪽 법률행위를 모두 취소하고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전득자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전득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모두 알지 못한 경우에만 취소를 할 수 없다.	본 사안에서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김수철이 다시 최종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중의 처분행위에 대해,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판례이다.

C-010 관련 판례

C-010-청구 관련 판례

판례	사 건	핵심법리	본 사안과의 관련성
(1) 대법원 1998.4.14. 선고 97다54420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 김수경이 유일한 부동산을 김수철에게 매각한 행위와 정확히 부합하며, 사해의사 추정과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리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연대보증인의 구상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 상황에서 사해의사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2)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68901 판결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수익자가 이를 다시 전득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양 거래를 모두 취소하고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전득자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모두 알지 못한 경우에만 취소 불가능하다.	본 사안은 김수경→김수철→최종찬으로 이어지는 이중거래 구조로서, 전득자 최종찬의 악의 추정과 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를 제공한다.